붙임 : 1. 학생복지처 업무 관련 공람 공고

학생복지처 관련 규정 공람 공고

서정대학교 학생복지처는 총학생회칙 및 학생회장 선거 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열람하시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개정된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반의 절차에 따라 공포하고 2017년 12월05일자로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학생복지처 관련 2개의 규정
2. 공람기간 : 2017년11월20일부터 12월04일 18:00시 까지
3. 의견제출 : 학생복지처

2017년11월20일

서정대학교 학생복지처장

붙임 : 2. 학생회장 선거 규정 관련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학생회장선거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총학생회 회칙 제3장 재정 제22조(예산편성) 4. 예산 결산 시 잔액이 발생하면 차기이월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금이 많을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총학생회 회칙 제3장 재정 제22조(예산편성) 4. 예산 결산 시 잔액이 발생하면 차기이월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금이 많을 경우 총학생회의 회의를 통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인 명부 작성) 1.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와 위원회에 각 1부씩 비치한다. 2. 선거인 명부는 과별, 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인 명부 작성) 1.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와 위원회에 각 1부씩 비치한다. 2. 선거인 명부는 과별, 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선거활동에 필요한 학생명부를 학생복지처에 요청 할 수 있다.** **4. 학생명부의 제공은 학생복지처의 절차에 따르며 파기는 요청 목적 상실 후 즉시 파기한다.**

총학생회 회칙

제정 2003. 03. 08. 개정 2007. 09. 05.
개정 2009. 03. 09. 개정 2014. 02. 27.
개정 2014. 08. 28. 개정 2016. 04. 15.
개정 2017. 11.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서정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본 대학 학칙 제 33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신장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민주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금지활동) 1. 본회의 회원은 학내에서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2. 본회의 회원은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제6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7조(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5.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
6. 각종 수련회. 훈련 및 홍보활동

제 2 장 기 구

제 1 절 총학생회 구성

제8조(임원) 본 회는 학생회장 1인, 부 학생회장 1인, 각 부서장, 차장을 둔다.

제9조(부서) 본 회는 합리적으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어 각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본 회의 서무회계 및 문서관리와 각종 회무를 총괄하여 제반사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홍보부 : 본 회의 모든 사업 활동에 관한 홍보 및 여론조사 및 외부행사의 선전을 담당한다.
3. 체육부 : 본 회의 회원들의 친목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담당한다.
4. 기획부 : 본 회의 1년 정책과 노선을 입안 기획하고, 각종 행사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5. 복지부 : 학생들의 복지증진, 사물함관리, 위생, 물품, 약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관리부 : 본 회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담당하며 각 부서별 업무에 도움을 준다.
7. 동아리부: 학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자격) 1. 학생회장, 학생회 부회장(이하 "회장","부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학생경비를 납부 한 자.
② 품행이 방정 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③ 전학기 평균 성적이 "B"(평균 3.00이상)학점 이상인 자
④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⑥ 기타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2. 학생회장, 부회장은 동반 입후보(running mate)로 한다.
3. 학생회의 각 부서장 및 차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학생경비를 납부 한 자.
② 품행이 방정한자
③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 없는 자
④ 기타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제11조(선출) 각 학과 회장,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 당선 공고일 부터 차기 회장 당선 공고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회장의 업무 및 권한) 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2학년이상 재학생 중에서 각각 부서장을, 1학년 중에서 각 부서 차장을 선발,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각 부서의 장을 지휘 통솔한다.
4. 회장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5. 기타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2 절 총학생회

제15조(지위) 총학생회는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16조(구성) 총학생회는 본 회의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제17조(임기) 총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기능) 1. 총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후 학생지도위원회 상정
②학생회비 산정 후 학생지도위원회 상정
③사업계획의 수행
④예산집행 및 결산보고서의 학생지도위원회의 제출
⑤회칙 개정 및 수정발의
⑥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 1. 총학생회는 월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서기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임시회의 소집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1조(학생경비) 1. 본 회의 회원은 학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생경비는 매년 총학생회에서 책정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생경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본 대학 당국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은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학생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동아리 활동, 행사참여, 사물함 신청 등)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편성)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 14일 이내에 운영계획서와 예산 안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상정한다.

2.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예산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회장은 학생복지처장의 지도를 받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확정 후 추가 결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예산 결산 시 잔액이 발생하면 차기이월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금이 많을 경우 총학생회의 회의를 통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30일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감사) 집행위원회는 회계연도 말에 업무의 회계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5조(회칙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 1/3이상의 찬성 및 각 학과 학회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회부한다.

2. 위의 개정안은 총학생회 및 각 학과 학회장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장 선거규정

제정 2003. 03. 08. 개정 2007. 09. 05.
개정 2009. 03. 09. 개정 2014. 02. 27.
개정 2014. 08. 28. 개정 2016. 04. 15.
개정 2017. 11.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정대학교 학생회칙 제11조에 의거 정.부 학생회장 선거 전반 에 걸쳐 공정한 사무를 집행하며 학생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경비를 납부한 자
② 품행이 방정 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③ 1학년 재학생 또는 3,4년제 학과의 2학년 재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B학점 3.00 이상 자
④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제4조(선거방법) 1.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2. 회장후보와 부회장후보는 동반 입후보(running mate)로 한다.

제5조(임기) 1.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이 유고시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 임무를 승계하고 부회장 유고 또는 공석 시는 회장이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된 자를 임명한다.
3.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는 보궐선거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선거시기) 선거는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7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경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선거관리)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은 각 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1인을 선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은 각과에서 1명씩 학회장이 추천하는 학생(또는 본인)을 학(부)과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지도위원(전임교수)을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당선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는 한 24시간 후 자동 해체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요청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5. 기타 선거 및 공고

제11조(금지사항) 위원회 위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위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 후보자와 함께 자격을 박탈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작성) 1. 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와 위원회에 각 1부씩 비치한다.
2. 선거인 명부는 과별, 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선거활동에 필요한 학생명부를 학생복지처에 요청 할 수 있다.
4. 학생명부의 제공은 학생복지처의 절차에 따르며 파기는 요청 목적 상실 후 즉시 파기한다.

제13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 한다.

제 2 장 후보자등록 및 투표, 개표, 당선공고

제14조(등록절차) 1.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등록원서(소정양식)
② 선거권자 200인 이상의 추천서 (단, 추천자는 정.부회장 동반후보 1개 팀에 한함)
③ 학(부)과장 추천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2. 입후보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일을 연기한다.(1주일간 연기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원조회를 요구했을 때 동의할 의무가 있다.

제15조(등록무효) 1. 등록 후 입후보자의 결격사유 발생시는 위원장은 즉시 등록 무효를 본인에

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인은 복수추천 및 중복추천을 할 수 없다.

제16조(순위결정) 위원회는 등록을 마감하고 입후보자가 자격심사 후 즉시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하고 기호 순으로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제17조(선거운동 및 방법) 1. 입후보자는 등록마감 익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입후보자 및 그 운동원은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은 소견발표, 벽보 및 간단한 유인물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문(전문), 벽보, 유인물 등은 사용 3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인)을 필하여야 한다.

4. 소견발표는 합동발표회 1회에 한하며 발표회의 시간과 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5. 모든 선거운동원은 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운동원의 자격은 본 대학 재학생에 한 한다.

제18조(투표) 1. 기표방법 : 위원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투표용지에 기록된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준비된 기표기구로 "○"를 표시한다.

2. 무효표

①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후보자의 성명아래 기표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것

③ 어느 후보자도 기표하지 않은 것

④ 정상적인 시각으로 식별이 곤란한 것

⑤ 기타 유.무효표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선거인은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소정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4. 투표소 내에서는 지도위원과 위원회 위원 및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 이외에는 상주를 금한다.

5. 투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9조(개표) 1.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참관인은 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제20조(참관인) 각 후보자의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정하여 위원회에 보고 한 1인에 한한다.

제21조(당선결정) 1. 당선은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개표종료일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입후보자가 1팀일 경우는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에 투표율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단, 위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단 1회에 한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결과 역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락을 결정한다.

3.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자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선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금기사항)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입후보자와 그 운동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수수 접대 및 향응제공, 폭행, 협박, 납치행위
2. 추천서 등 등록서류를 부정한 작성 및 사용 행위
3. 소견발표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5. 교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